

문서번호	복지정책과-25155
결재일자	2015.10.28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희망복지지원담당	복지정책과장	교육문화복지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김수연	代김은숙	민지선	代민지선	김병환	10/28 김영배
협 조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법제담당 代신봉근 </p>				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(안) 확정방침

2015. 10.

교육문화복지국
복지정책과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(안) 확정방침

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

I 추진 개요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계획
 - 구청장 방침 (2015.09.17.)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」 입법 예고
 - 입법예고 기간 : 2015. 9. 24 ~ 2015. 10. 14. (20일간)
 - 의견제출사항 : 의견 없음
- 관련부서 사전 협의
 - 부패 영향 평가(감사담당관) : 원안동의
 - 인권 영향 평가(감사담당관) : 권고안 일부 반영
 - 성별 영향평가(여성가족과) : 원안동의
 - 아동 영향평가(교육청소년과) : 원안동의
- 조례안 확정방침 : 2015. 10. 26.
-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: 2015. 11.
- 구의회 조례안 상정 : 제238차 2차 정례회
- 공포 및 시행 : 2015. 12. 31

II 주요 내용

- ‘위기상황’, ‘긴급지원’, ‘지원대상자’ 용어의 정의(안2)
- 위기상황의 사유로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 규정(안3)
 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시행규칙 제1조2의 위기상황에 대한 구체적 기준
- 지원내용, 방법, 절차 등은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적용(안4)

III

참 고 사 항

■ 관련법규 : 「긴급복지지원법」

■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■ 기타사항

- 입법예고(2015. 9. 24 ~ 2015. 10. 14.) : 제출의견 없음

- 비용 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제출

- 부패·성별·아동 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- 인권 영향평가 결과 : 개선 권고

권고안	권고안 반영
제3조 2호 - ‘임신,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’를 ‘임신, 출산기간 또는 임신, 출산 후 1년 이내인 대상자’로 수정	<반영> - 해석상의 불명확함을 개선하기 위해 ‘임신 중 이거나 출산 후 1년이내’로 수정
제3조 10호 - ‘수도,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’에 ‘전기’를 포함할 것 - 공급 중단 기간을 ‘1개월 이상’에서 ‘1일 이상’으로 수정할 것	<미반영> -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으로 ‘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’가 위기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- 공급 중단 기간을 1일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판단됨
제3조 10호,12호 - ‘실직, 폐업 등’을 삭제할 것	<반영>
그 밖의 상황을 추가로 규정하여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할 것	<반영> - 제3조 16호 신설하여 반영함

붙임 1.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.

2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. 끝.